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농업재해지원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공익직접지불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6. 3. 4.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664”를 “668”로 하고, 일반직 계 “660”을 “66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39”를 “643”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1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농산업혁신정책실 1개 정책관등	1명
2. 동물복지정책국	0명
3. 동물복지정책국 1개 과	2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장 <u>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u>	제9장 <u>평가대상 조직</u>
제41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u>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u> 에 두 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제41조(평가대상 조직) ① ----- ----- ----- <u>농림 축산식품부</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64</u>	<u>668</u>	+4
·	·	·	
·	·	·	
일반직 계	<u>660</u>	<u>664</u>	+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39</u>	<u>643</u>	+4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7